



Web Contents



2025년 01월 13일 20시 02분
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

- 접수: 연중 접수(17.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됨)
- 접수기관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(원산로45번길 5)
- 장소: 부인주소지 관할 보건소

지원대상

- "난임진단서"제출자
 - ※ 난임진단서는 경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
 - ※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.

지원내용

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		지원내용(연령구분폐지)
지원기준(신설)		1인당 25회 → 출산당 25회
체외수정(1~20회)	신선배아	최대110만원
	동결배아	최대50만원
인공수정(1~5회)		최대30만원

※ 연령구분 폐지(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 적용) * 24. 11. 1. 이후 적용

신청방법

- 온라인 : 정부24(www.gov.kr),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(<https://www.e-health.go.kr/>) 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
- 방문: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(목포시 원산로45번길 5, 목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)
 - *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부부 방문 신청(온라인 신청 불가)

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신청	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(보건소 방문 작성) 2. 난임진단서 1부(최초 1차 신청 시 제출) * 인공수정용, 체외수정용 별도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(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) 4. 주민등록등본 1부 ※ ③~④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5.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
	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-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1부 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당사자별 각 1부 -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(해당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) ※ '사실상 혼인관계'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며,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※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,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
추가	

원외약제비 지원 안내

(<http://www.mokpo.go.kr>)

-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,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- 구비서류 : 시술비 청구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통장사본
- 청구기간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지원범위: 프로게스테론 주사제(난임주사제)의 시술의료기관 외에서의 원내처방 및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
※ 원외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,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

